



발전소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는 안된다!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금화PSC지부,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 발전 HPS지부,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수산인더스트리지부, 일진파워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발전소 안전을 위한 원청 책임 촉구 :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이태성 사무처장

화물노동자 산재발생 규탄 :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부분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

고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1. 최근 발전소 내 산재현황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의원실]

연도	건수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발전사	소계	남부	남동	서부	중부	동서	소계	남부	남동	서부	중부	동서
2015	24	1					1	23				13	10
2016	75							75	47	8	8	9	3
2017	33							33	7	12	5	6	3
2018	54							54	6	20	5	19	4
2019	38	2		1			1	36	5	9	3	17	2
2020	19	0				제출 ×		19	4	6	8	제출 ×	1
총계	243	3 (1.2%)		1			2	240	69	55	29	64	23

(서부발전의 경우 이성만의원실 제출자료 : 산재자 8명에 대한 구분이 없어 우선 하청업체 통계에 산입 함)

2. 태안발전소 산재사망과 관련한 권고, 지침, 계획

(1)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특조위 권고안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권고안 이행이 되지 않아, 발전소 내 노동자들간의 위계가 그대로 존속. 전조직적이고 통합적인 안전 문화형성 안됨.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권고안 이행이 되지 않아, 실제 위험업무에 투입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의견이 안전정책에 반영되지 못함.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축과 의료체계 확립	이번 사고에서 산재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권고안.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름.

=> 권고안의 미이행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20.6.5.)

기획재정부 지침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
<p>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 이번 [스크류 반출정비공사] 계약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음.</p>
<p>제12조(안전근로협의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 안전근로협의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p>
<p>제21조(임원의 책임)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결과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p>- 공공기관 임원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다단계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발생 시 실효성 없음.</p>

=> 발전소에 실현되지 못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지침

(3) 서부발전(주) 안전관리계획(2019. 6)

3 **기본 방향**

< 안전 VISION >
Safety Together, Create Future
 함께하는 안전경영으로 서부발전의 미래를 창출한다.

< 안전경영방침 >
 인간존중을 기반으로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 안전경영목표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
사망자수(명)	2	1	1	0

< 4대 전략방향 >

작업장 위해요소 개선 <b style="color: red;">원청으로서의 책임강화	안전 경영체계 구축 안전 인식·문화 개선
--	---

<참고> 1 남동발전 산업재해 감축목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명)	1	0	0	1	1	0
	발주공사 재해율(%)	0.33	1.15	0.29	0.39	0.75	0.38

* '19년 목표치

□ '19년 목표설정 근거

○ 사고 사망자수(명) : 사망사고 Zero로 근로자의 생명 보호

<참고> IV 2019년 남부발전 안전관리 추진 계획

< 주요 성과지표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재해 사망자수	2	0	1	0	1**	0
화 재 건 수	0	1	1	2	0	0
중대산업사고 건수	0	0	0	0	0	0

* '19년은 목표치 ** '17년 11월 발생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18년 산업재해 승인

=> 원청으로서의 책임강화가 주요 전략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발전소 내 작업 전 과정에서 원청의 역할은 보이지 않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안전시설·장비구축	268,627	337,110	339,107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	148,612	153,457	236,904
안전시스템 구축	20,604	24,176	19,211
안전교육훈련	159	199	487
안전 R&D	10,513	12,848	18,380
안전인증 획득	41	39	42
합 계	448,556	527,829	614,131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비 가이드라인 적용

- 안전시설 및 장비 구축(노후 및 운영설비 보강 등) : 3,391.1억원
 - 태안 1~4호기 미분기 감속기 정비, 태안 5,6호기 보일러 튜브 제작 등
-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 : 2,369.0억원
 - 태안 1~10호기 컨베이어벨트 아이들러 정비자재 구매 등
- 안전교육훈련 : 4.8억원
 - 신입사원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등
- 안전시스템 구축(사이버 안전관리 포함) : 192.1억원
 - 태안 발전설비 현장 안전관리용 웹카메라 신설 등
- 안전 R&D : 183.8억원
 - 태안 IGCC 가스화기 운전신뢰도 향상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안전인증 획득 : 0.4억원
 -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등

=> 안전예산으로 연 5~6천억원을 들이지만 현장에 신호수 배치안됨.

IV. 2019년 안전관리 추진 계획

3

원청으로서의 책임 강화

- 소규모 협력사 안전관리자 고용지원 사업 확대('18년 1社 → '19년 4社)
 -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협력사 안전관리자 고용비용 지원
 - 안전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로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유도
- 고위험작업 안전관점 작업절차 재설계 기준 제정('19.7~9월)
 - 고위험작업에 대한 인명사고 위험성 근원적 해결
 - 작업별 작업절차 재설계 및 발전설비관리시스템 반영
 - * 전문가 Pool 구성(작업감독+협력사 근로자+외부전문가), 고위험작업 최적관리방안 도출
- 안전전문기관 합동 사업소 및 협력사 현장 안전관리 점검 정례화(1회/반기)
 - 안전법규 이행여부 점검, 안전진단, 개선방안 도출 및 자문
 - (정기)사업장별 반기 1회, (수시)계획예방정비공사 등 위험현장
- 경영진의 현장 안전점검 정례화를 통한 직원 안전의식 제고
 - (CEO)반기 1회 이상, (안전담당경영진)분기 1회 이상
 - 명절, 동절기, 하절기, 해빙기 등 안전취약시기 현장 안전점검
-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19.10월)
 -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작업 일시 중지 요청 →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시행
 - Safety Call에 대한 요청자 신변보호 및 기록관리 전산화

=> 이번 사고 직후,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것만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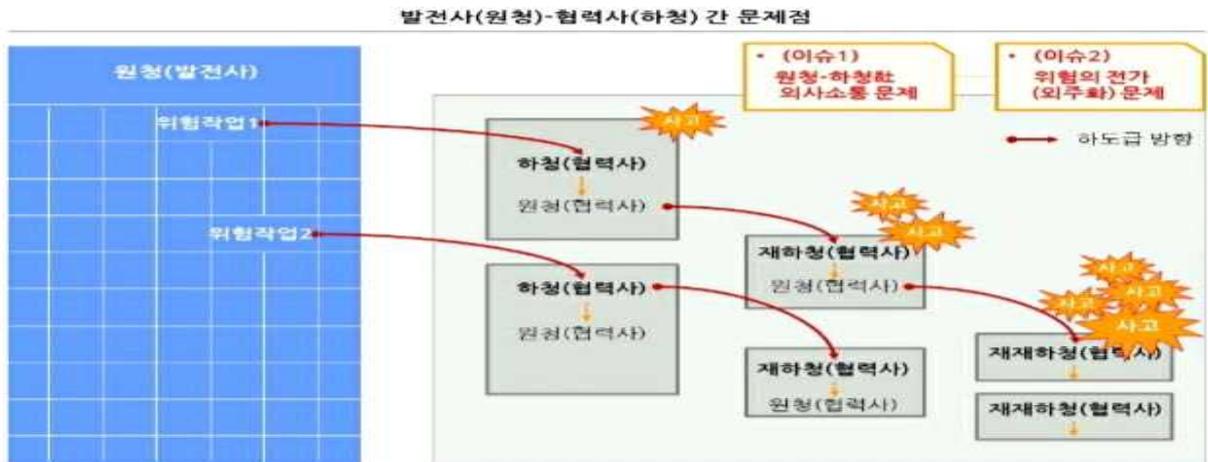
3. “책임은 외주화되지 않는다” 는 원칙 필요

(1) 발전소 측의 책임

- 발전소에 방문한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발전소에 있음. 그 사람이 발전소에 고용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소라는 장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발전소 측에 있기 때문임. 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위한 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어떤 조건에서도 발전소에 있음.
- 이번 사건에서 발전소 측은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안전하지 않은 요인이 있을 시 작업중단, 시정하도록 하고, 산재가 발생하였을 시에 피해를 최소한이 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어야 함.
- 작업은 외주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책임은 외주화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함.

(2) 고용, 작업단계가 늘수록 사고도 증가

340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 : 2020. 4. 10. 15:04

나. 발생장소 : 시립건설본부 단합건물 1층 전기실

다. 사고경위

2020. 4. 10. 15:04 발향건을 전기실 수전 상태에서 TR(변압기) 상Test 중 전기압선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중부발전직원 1명, 금호건설 직원1명, 금호건설 협력업체 직원 2명, 총4명이 부상된 사고임.

2. 사고자 인적사항

가. 인적사항 : 중부발전 1명, 금호건설1명, 금호건설 협력업체 2명 (총4명)

나. 환자상태 : 44살 이모씨 전신3도 화상 중태(금호건설), 3명 일교 받다리 화상(중부발전 1명, 금호건설 협력업체 2명)

다. 조치상황 : 사고 발생 후 병원이송 완료
중부발전 1명(원장대병원), 금호건설1명(중작오송 메스다안병원),
금호건설 협력업체1명(원장대병원), 금호건설 협력업체1명(전북대병원)

라. 향후조치 : 병원 입원 치료

(3)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점검이 필요한 이유?

인건관련 기술개발

시, ICT 등 최첨단기술과 선진시스템 적용으로 안전 작업 환경 구축

- 일체화된 작업자 위치추적-비상 시스템 확립이 선행, 위치가스공부, 지층 변화 감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고 징후 감지시 감속차, 근로자들에게 위험 경보 송출

안전 컨베이어 접근통제 시스템

안전 총 컨베이어에 근로자 접근시 직육면체 센서 감지후 자동 정지, CCTV촬영 등 실시간 모니터링 영상 전송

- 작업중 활동 컨베이어 정지시간 원격 감시 안전 기술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차단을 위해 컨베이어 의한 작업 정지장치 설치, 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원격 정지 및 비상정지 시스템(DAS) 도입

※ DAS(Distributed Acoustic Sensing) : 공압관 분포 센서를 이용하여 음향파에 의한 진동센서 세기 및 주파수변화를 측정 분석하여 고압 유류 진단

실제로 필요한 것은 경고나 감시 아닌 비상정지 필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밀폐공간 메뉴얼과 안전통제 인력, 설비개선 필요!



합동대책(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동발표문)과 이행 여부

항목	내용	이행	비고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고용형태 개선	19.12.12 정부발표 운전 : 별도의 공공기관 설립 (안전산업개발 활용) 논의 공전 중 정비: 전원 제외 (고용보장, 처우개선) 논의 중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2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 인력 조속히 증원	중원(계약직 인력으로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3	도급계약서 상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중간 착복 없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이 마련	여전히 하청업체 착복	산업통상자원부
4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완,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 작동상태 점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며 1급발암물질 대책도 미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5	재발방지대책은 이후 구성될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김용균 특조위에서 제안한 이행점검위원회 미구성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4) 원청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

- 원청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선언으로 실현될 수 없음.
- 원청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

<기자회견문>

**원청의 책임회피가 산재사망을 부른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9월 10일 태안발전소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19년 8월 19일 특조위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이어 2019년 12월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당정발표도 있었다.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공공기관 안전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8일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지침")을 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서부발전(주)도 정부의 지침에 맞춰 한국서부발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왜 또다시 태안발전소에서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원청인 서부발전(주)는 특조위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매년 5천, 6천억 안전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이 사망하였다. 안전비용을 덜 지출해서인가?

사고 직후, 서부발전(주)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서부발전(주)의 안전기본계획에 전략과 추진계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청 책임'의 실체는 무엇인가. 중량의 장비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지 않고, 위험요인이 있어도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발전소 내에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으면서 원청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발전소 내에서의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다. 고용은 외주화해도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 정부가 앞다퉀낸 방안, 지침, 평가, 서부발전(주)의 안전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산재사망은 되풀이된다. 지금까지 특조위 권고안의 미이행에 나몰라라한 정부와 여당에게도 이번 산재사망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발전소에서 산재사망을 볼수없다! 죽지않고 일하고 싶다! 특조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는 이행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며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9월 15일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